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32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산・학・연・관 협동과정운영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학원혁신본부), 02-970-6799

- 제정 2012. 3. 1.
- 학칙개정 2015. 12. 31.
- 타규정개정 2021.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연구기관 간에 체결한 연구 및 교육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따라 과학기술개발정책에 부흥 하는 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산·학·연·관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과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산·학·연·관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 이라 한다)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개정2021. 9. 1.)

-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협동과정의 학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동학위과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21. 9. 1.)
 - ② 운영위원회는 대학원혁신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협동과정 설치학과 교원 중에서 대학원혁신본부장이 추천하는 3명 및 연구기 관(이하 "협약기관" 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

- 원을 총장이 임명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혁신본부장이 된다. (개정2021. 9. 1.)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학사운영) 협동과정의 학사운영은 학칙과 학사운영 규정을 따르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5조(학과 및 정원) 협동과정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과는 이 협동과정을 위한 협약기관과의 협약서에 명시된 분야와 관련되는 학과로 하며, 구체적인 학과 및 정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2021. 9.1.)
- 제6조(입학) 협동과정의 입학 및 전형절차는 학칙과 학사운영 규정을 따르되 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교육과정은 대학원이 운영하되 교육과정 중에서 기초 및 전공과목은 원칙적으로 대학원이 담당하고, 특수 분야의 전공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협약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 ②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실습 및 연구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관에서 담당한다.
- 제8조(교원교류) ① 협동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협약기관의 연구원을 본교의 겸임교수로, 본교의 교원을 협약기관의 위촉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겸임교수와 위촉연구원에게는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① 학위논문의 지도는 대학원과 협약기관에서 각

1명씩 지도교수를 선임하는 공동지도 교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과, 학생정원 및 입학에 관한 사항
- 2. 학위청구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3.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이 과정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11조(대학원위원회 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제59호, 2012.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연협동과정 운영규정은 이 규정시행으로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307호, 2015. 12. 31.>(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산·학·연·관 협동과정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NID융합기술대학원"을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으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632호, 2021. 9. 1.> (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